

	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1983. 3. 1.
		최종개정일자	2015. 10. 1.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과학대학교 교육과정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는 교육혁신처장 및 기획산학처장, 교무입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된다.

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3조(학과별 교육과정 소위원회) 각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심의하기위해 학과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하되 산업체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①위원회는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
2.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운영기준 및 개선방안
4. 교과목의 학점 및 강의시수 결정
5. 교양 및 전공교과의 이수단위 결정
6. NCS기반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보완 운영에 관한 사항
7.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초교양(직업기초능력)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9. 학년도별 교육과정 편성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
10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위원회는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혁신처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2010년 8월 1일 최종 개정되어 시행해 온 “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”은 폐지한다.